

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15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1년 2월 25일
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안 제23조제1항에서는 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 목적을 효율적인 심의와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을 위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나,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의 경우 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바,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소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을 삭제함(안 제23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3조제1항 중 “효율적인 심의와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”를 “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"협약기준"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 하 "시장"이라 한다)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바.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사.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사. 「<u>소음진동관리법</u>」 제7조에 따른 <u>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</u></p> <p>아. 「<u>소음진동관리법</u>」 제26조에 따른 <u>교통소음진동관리기준</u></p> <p>자. ----- ----- -----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바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사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아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자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1조(평가업자 신고) ① <u>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평가업자는 대행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평가업자 신고 방법 및</u></p>	<p><u>〈삭제〉</u>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평가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 변경등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(협약내용의 통보)</p> <p>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(제14조제1항에 따른 검토·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. 이하 "협약내용"이라 한다)를 제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19조(사업자의 이행의무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,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, 공사를 재개하려는 때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	<p>제15조(협약내용의 통보)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, -----</p> <p>-- 사유 발생 시 협의기간을 한 차례-----.</p> <p>1.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</p> <p>2. 공휴일 및 토요일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사업자의 이행의무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</p> <p>--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-----</p> <p>-----</p> <p>--. 이 경우, 승인기관의 장</p>	<p>제15조(협약내용의 통보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9조(사업자의 이행의무)</p> <p>①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---	--	--

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⑥ (생 략)</p> <p>제23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,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되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가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한다.</p>	<p>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1.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</p> <p>2.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3조(소위원회) ① ----- -- 효율적인 심의와 특정 분야에 대한 지문을 위하여 ----- -----.</p> <p>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.</p>	<p>⑥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23조(소위원회) ① ----- --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----- -----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---	--	---

#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사목을 자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소음·진동 배출허용기준

아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·진동 관리기준

제11조는 삭제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하며,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”을 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”로, 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한 번”을 “사유 발생 시 협의 기간을 한 차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
2. 공휴일 및 토요일

제19조제5항 중 “공사를 재개하려는 때에는”을 “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
2.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

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"협약기준"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바.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<p>〈신설〉</p> <p>사. (생략)</p> <p>제11조(평가업자 신고)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평가업자는 대행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평가업자 신고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평가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사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<u>소음·진동 배출허용기준</u></p> <p>아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6조에 따른 <u>교통소음·진동 관리기준</u></p> <p>자. (현행 사목과 같음)</p> <p>〈삭제〉</p>



제15조(협의내용의 통보) 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(제14조제1항에 따른 검토·보완 요청 내용을 포함한다. 이하 "협의내용"이라 한다)를 제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③ (생략)

제19조(사업자의 이행의무) ① ~ ④ (생략)

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,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, 공사를 재개하려는 때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⑥ (생략)

제23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

제15조(협의내용의 통보) ①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, ----- 사유 발생 시 협의기간을 한 차례-----.

- 1.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
- 2. 공휴일 및 토요일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사업자의 이행의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----- . 이 경우,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

- 1.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
- 2.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

⑥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

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,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되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가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한다.

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.